

부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라급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0일

부산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(법률, 2025. 7. 1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, 2025. 10. 1.)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(대통령령, 2026. 1. 2.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예규, 2025. 6. 2.)
-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(부산광역시의회규칙, 2025. 12. 10.)

2. 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▶ 1개 분야 1명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등급	인원
행정 (정책협력·입법· 행정지원 요원)	부산광역시의회 (담당관 또는 전문위원)	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(주 35시간)	1명

※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,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
2-1. 임용분야 주요직무

임용분야	주요직무
행정 (정책협력·입법· 행정지원 요원)	○ 행정사무 감사,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○ 공청회, 세미나, 토론회, 연구활동 등 지원 ○ 조례·예산안 등 소관 안전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○ 각종 의안 등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○ 서면질문·5분자유발언·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지원 ○ 기타 통상적인 의정활동 홍보 자료작성 등 행정업무지원

3. 응시 자격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(공직선거법, 병역법,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12.31. 이전 출생자)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>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**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분야별 자격요건(기준일 :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 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자 격 요 건
행정 (정책협력·입법·행정지원 요원)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(주 35시간)	◎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> 국회, 지방의회, 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*, 대학 및 대학에서 설립한 연구소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를 수행한 경력 * (국가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) '26. 1. 29. 재정경제부 지정, 342개 공공기관 (지자체 산하 공공기관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

- 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(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- ※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민간 경력(1, 2번)과 공무원 경력(3번)은 합산이 불가함
- 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- ※ 임용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 및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,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. 다만,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: 주20시간 근무)

4. 보수 수준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8급(상당)	62,096천 원	44,296천 원	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- ※ 상기 보수액은 주40시간 기준액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(35시간)에 비례하여 책정함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
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시험일정 ※ 시험일자, 시험장소,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공 고	원서접수	시험구분	시험일자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6. 7. 20.(월) ~ 7. 31.(금)	'26. 7. 31.(금) ~ 8. 5.(수)	서류전형	'26. 8. 11.(화) ~ 8. 12.(수)	시의회사무처	'26. 8. 13.(목)
		면접시험	'26. 8. 19.(수) ~ 8. 20.(목) ※ 임용점검위원회 (합격자 결정 전)	시의회사무처	'26. 8. 27.(목) 이내

나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제5항)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, 아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제4항)

심사항목 배점기준	일반요소			전문요소		
	소계	자 기 소개서	직무수행 계 획 서	소계	관련분야 근무경력	근무경력 직무연관성
100	60	30	30	40	30	10

- ※ 서류전형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응시자 적의 판단하에 접수기간 내 기타서류 제출

다. 2차 시험(면접시험) (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한 개별면접)

- 평가방식 : 5개 평정요소마다 상(20점~16점), 중(15점~11점), 하(10점이하)로 평가
 -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평정점수(항목별 점수 합계)가 가장 높은 자로 결정
 -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.
 - ※ 동점자가 있을 경우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('상'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되, '중'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*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)
 - *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기간 : '26. 7. 31.(금) ~ 8. 5.(수), 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

다. 접 수 처 :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(시의회 2층)

라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메일, 택배,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)

- ▶ 우편주소 : 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,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 임기제 채용담당자 (☎051-888-8334)
- ▶ 우편접수시, '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'를 함께 우송(미 동봉시, 접수불가)
- ▶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
- ▶ 원서접수기간 이전 소인은 인정하지 않음

마. 유의사항

-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, 원서접수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(발송 기준)
- 시험시행기관은 접수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, 이때 보완기한은 접수(우편도착) 익일까지로 한정하며, 접수기간 경과 후 신규 서류제출 불가
- 응시번호와 면접순서는 별개로 부여할 예정임

7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
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▶ 응시수수료 : 8~9급(라~마급) 5천원

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(행복민원실)에서 구입) 날인

-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'우체국 통상환증서'로 대체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*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해당 증명서 제출

*상기 내용 중 미성년 자녀는 2007. 8. 3. 이후 출생 자녀가 해당(원서접수일 기준)

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**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**

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⑥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

▶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
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▶ 발행기관(단체)의 **관인이 날인된 원본**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
▶ 근무기간,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

▶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인정되는 **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<별지 제8호 서식>'** 추가 제출

▶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, 근무경력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'사업자등록증' 사본) 첨부

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강사, 프리랜서 등)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'주당 근무시간'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
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 모두 제출

*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▶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

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'**보험가입 전체기간**'으로 발급(**선택 금지**)
-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 경력 인정
(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기재 경력은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)

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
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
⑪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(최근 6개월 이내)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①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<별지 제8호 서식>

②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(사본)(**총 5점 이내**)

-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③ 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

- 각종 대회 수상·상훈은 **3점 이내로 한정**
- 학위논문 제출시 : 반드시 **1매 이내의 요약서(자유 서식), 논문 표지, 서론 사본** 제출
- 연구실적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**2점 이내로 한정**

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

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

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유효기간 이내) **발행분에 한하며**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※ (증명서)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**한글번역본**을 함께 첨부(미제출시 인정 불가) ※ **최종합격 시 사실공증**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함
-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함

8. 기타 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
-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,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(2개 이상의 분야 동시 공고 시)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자(서류전형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※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기간이 긴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함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(영리업무의 금지)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,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
- 시험장소 안내,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busan.go.kr>) '고시공고'

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험 및 임용 관련 규정·절차에 따라 추진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(051-888-8334)으로 문의 바람

붙임 1. 직무기술서 각 1부.

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. 끝.